김제시 공고 제2024 - 455호

공시 송 달 공 고
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 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
- 1. 서류의 명칭 : 2024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4. 3. 28. ~ 4. 12.(15일간)
- 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4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
- 5. 공시송달내용
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,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전라북도 김제시청 세정과(☎063-540-3295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. 3. 28.

김 제 시

